

◎기획재정부공고 제2025-82호
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3월 21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조세채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,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세기본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포상금의 지급대상, 지급요건 및 한도 등을 정하고,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(참조 : 조세법령운동팀, 전화 (044)215-4151, 팩스 (044)215-8064, 이메일 greg0305@korea.kr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동팀
- 전자우편 : greg0305@korea.kr
- 팩스 : 044-215-8064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동팀(전화 044-215-4151, 팩스 044-215-80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